

*사회배려대상자 선정 기준

1. 교비어학연수1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으로서, 아래의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자 중 다음 심사항목의 배점이 상위취득자부터 선발함

아래 3가지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함

1. 부/모 연소득 합산 6,000만원 미만
2. 부/모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산 18만원 미만
3. 부/모 연간 순수재산세 주택 (또는 토지, 건물) 합산 50만원 미만

심사항목 점수

1) 부/모 연소득 합산 6,000만원 미만 (배점 30점)

부/모 연소득합산	3,000만원 이하	3,000만원이상~ 4,000만원미만	4,000만원이상~ 5,000만원미만	5,000만원이상~ 6,000만원 미만
배점	30	25	20	15

2) 부/모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산 (배점 30점)

부/모 건강보험료합산	8만원이하	8만원이상~ 12만원미만	12만원이상~ 16만원미만	16만원이상~ 18만원 미만
배점	30	25	20	15

3) 부/모 연간 순수재산세 주택(또는 토지, 건물) 합산 50만원 이하 (배점 30점)

부/모 순수재산세 합산	없음	10만원이상~ 20만원미만	20만원이상~ 30만원미만	30만원이상~ 40만원미만	40만원이상~ 50만원미만
배점	30	25	20	15	10

4)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(가산점 10점)

※ 제출서류 발급처

	구 분	대 상	서류명	발급처	기준연도
1	연소득 (택1)	자영업자	소득금액증명원	세무서	2011년, 2012년
		직장인 (택1)	소득금액증명원	세무서	2012년, 2013년
		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근무처(회사)	2012년, 2013년
		무소득자	사실증명	세무서	2013년
2	건강보험료	1. 건강보험증 복사본 2.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		건강보험공단	2014.1월~3월 (2013.12~2014.2)
3	재산세	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		주민센터	2013년

□ 각 항목별 아래의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여, 지원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

□ 재산세의 경우,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아닌 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 제출

□ 연소득 또는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제출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 (주부, 농수산업, 종교인 등의 경우에 해당)

□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는 납부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, 과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세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

2. 월 건강보험료 계산방법

가. 가입자(세대주)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 (건강보험공단 및 인터넷 발급)

나. 계산 방법

- 월건강보험료 = 최근 3개월분 고지금액 ÷ 납부개월수

※ 장기요양보험료, 연말정산 금액은 합산 제외

※ 최근 3개월은 2014년 1월, 2월, 3월임

(2013년 12월 또는 2014년 4월분을 포함하여 최근 3개월을 계산하여도 무방함)

<예시> 월 건강보험료의 올바른 산출 방법

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

발급번호 : 00-00000000-00000000

☐ 건강보험료
☐ 장기요양보험료
☒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

가입자 명칭	홍길동	주민등록번호	850805-1*****
사업장 명칭	(주)미래전자	납부자번호	000000000000

2012년 01월 ~ 2012년 12월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 납부내역

월별	고지금액		납부금액	
	건강보험료	장기요양보험료	건강보험료	장기요양보험료
1월	216,820 원	14,200 원	216,820 원	14,200 원
2월	216,820 원	14,200 원	216,820 원	14,200 원
3월	216,820 원	14,200 원	216,820 원	14,200 원
4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5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6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7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8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9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10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11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12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연말정산	184,080 원	8,790 원		
납부 총액	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	2,900,580 원 186,860 원 3,087,240 원	사용목적	납부확인용

계산 : 650,460 원 ÷ 3 개월
= 216,820 원 (원미만 절사)

※ 기타 유의사항

-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증 기준으로 복사본 제출 및 납부확인서 발급
-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발급하여 복사본 제출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발급/출력 (건강보험공단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, 재발급시 가족대리인 가능,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)
- 납부확인서는 반드시 가입자(세대주)의 명의로 발급
- 의료급여증 보유자는 의료급여증 사본만 제출 (지원신청서 보험료란에 숫자 '0' 기재)

3. 재산세 계산방법 (부/모)

-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아닌 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 제출

가. 부/모(명의별 각각)의 2013 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 증명서를 발급 (주민센터 발급)

※ 부/모의 실제 거주 주소와 관계없이 소유 재산(주택, 건물, 토지)에 대한 모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

나. 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 상의 항목 중 재산세 주택(건물, 토지)에 대한 과세금액만 합산

※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 등은 제외하여 계산

※ 주민세, 취/등록세, 자동차세 등은 합산 제외 (주택, 건물, 토지만 합산)

다.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: 내용증명 (재산세가 없는 경우 부/모 모두 발급)

<예시> 재산세 계산방법 (토지와 건물도 동일하게 계산)

세목별 과세(납세) 증명서				처리기관	
발급번호 : 2012-000000					
납세 의무자		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래아파트 동 1호101			
		주민(법인)번호	000000-0000000	성명(법인명)	홍길동
영입장소					
상 호		영입종목		사용 목적	
과세물건		마두동 000 00동 504호 [2기분] (외 1건)			
세 목	년 도	기 분	과세번호	세 액	비 고
재산세(주택)	2011	홍거분(09월분)	163046	136,760	
지역자원시설세(특부)	2011	홍거분(09월분)	163046	2,210	
지방교육세	2011	홍거분(09월분)	163046	14,050	
소 계	마두동 000 00동 504호 [2기분]			153,020	합납
재산세(주택)	2011	수시분(07월분)	000009	136,760	
지역자원시설세(특부)	2011	수시분(07월분)	000009	2,210	
지방교육세	2011	수시분(07월분)	000009	14,050	
소 계	마두동 000 00동 504호 [1기분]			153,020	합납
합 계				306,040	

계산 : 136,760 + 136,760 = 273,520

<예시> 미과세의 경우

세목별 과세(납세) 증명서					처리기간
발급번호 : 2012-000000					쪽 수
납 세 의 무 자	주 소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래아파트 동 1호101			
	주민(법인)번호	000000-0000000	성 명 (법인명)	홍길동	
영입장소					
상 호	영입종목		사용목적		
과세물건					
세 목	년 도	기 분	과세번호	세 액	비 고
2011년 ~ 2012년 재산세, 재산세(건축물), 재산세(선박), 재산세(항공기), 재산세(토지), 재산세(주택) 과세(납세)사실 없음					

증명내용